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1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기덕,
김원중, 김원태, 남창진,
문성호, 박영한, 아이수루,
, 유정희, 윤종복, 이상욱,
이성배, 이원형, 이종배,
이효원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,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(지원)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,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그 밖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<u>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,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	제18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<u>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